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6
----------	-----

제출년월일 : 2023. 8.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상위법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 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1항과 3항의 법률조항 문구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 : 생략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6조제1항”을 “법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중 “법 제6조제4항”을 “법 제6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진흥계획) ① 군수는 <u>법 제6조제1항</u>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u>법 제6조제4항</u>에 따른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의 제안방법 등을 군의 공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p> <p>④·⑤ (생략)</p>	<p>제5조(진흥계획) ① ---- <u>법 제6조제2항</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법 제6조제5항</u>----- ----- ----- -----.</p> <p>④·⑤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취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 [법률 제19244호]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지사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⑥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경제건설국 도시과장 김재열
연락처	(033) 330 - 2470